##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

## 0 보육 및 유아교육

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들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보육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.

#### (1) 어린이집

- 어린이집은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아이들을 보육하고, 교육시키는 시설로 영유아보육법 제10조(어린이집의 종류)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시설이다.
- 보육시간은 평일 07:30~19:30까지를 기본으로 한다. 기관에 따라 야간연장보육, 24시간 보육지원을 하기도 한다.
-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며 바르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내용과 신체, 사회, 언어, 인지, 정서 등 발달을 위한 내용으로 교육한다.
- 월간 보육료는 보육시간 및 아이의 연령, 보육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. 만 0~2세(다문화가족 아동 포함)까지 연령별 정부지원 단가는 364,000~499,000원, 만 3~5세(다문화가족 아동 포함)는 누리공통과정으로 월 280,000원, 만 12세 이하 미취학 장애아에게는 532,000원을 지원한다.

#### (2) 유치원

- 유치원은 만 3~5세 유아들이 다니는 유아학교이다.
-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은 보통 09:00~17:00까지 운영된다. 유치원 여건에 따라 맞벌이 부모의 자녀를 위하여 07:00~22: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.
- 유치원은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, 신체운동·건강, 의사소통, 사회관계, 예술경험, 자연탐구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으로 교육한다. 주로 체험 및 활동(주제) 중심의 통합교육을 통하여 전인발 달을 돕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진다.
- 월간 유아학비는 만 3~5세 유아에 대해 국·공립유치원 월 100,000원, 사립유치원 월 280,000원을 지원한다.



#### 다문화교육 정책학교(유치원)

다문화교육 정책학교(유치원)로 지정된 유치원에서는 누리과정을 통해 다문화유아를 위한 언어 및 기초학습 등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, 모든 유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. 전국 131개 유치원(2018년 기준)이 다문화교육 정책학교(유치원)로 지정되어 있으며, 시·도교육청 또는 다문화교육 포털(www.edu4mc.or.kr)을 통해 거주지역의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(유치원)를 확인할 수 있다.

### 💯 보육료·유아학비·부모급여·가정양육수당 지원

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영유아(0~5세 이하)는 어린이집(0~5세)이나 유치원(3~5세)을 이용할 수 있고, 국가는 각 연령에 맞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.

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부모급여(현금),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.

#### (1) 보육료 지원

보육시설(어린이집)은 0세부터 만 5세 이하 아이들을 돌봐주는 기관이다. 자녀들이 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, 정부는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다.

#### ■ 지원 대상

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입학 전 만 0~5세 아이가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면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는다.

• 영유아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만0~2세(다문화가족 아동 포함)까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는 364,000~499,000원, 만 3~5세(다문화가족 아동 포함)는 누리공통과정으로 월 280,000원, 만 12세 이하 미취학 장애아에게는 532,000원을 지원한다.

(단위 : 원)

구분	지원단가	장애아보육료	비고
만 0세 보육료	499,000		
만 1세 보육료	439,000	532,000	
만 2세 보육료	364,000		-
만 3~5세 보육료	280,000		

- ※ '20.3월부터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기본보육(07:30~16:00)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,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 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
- 장애인복지카드(등록증)를 소지한 만 5세 이하 장애아동인 경우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, 예외적으로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~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진단·평가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. 또한, 제출된 의사 진단서에 반드시 장애 정도가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소견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(별표1)에 있는 「장애인의 종료 및 기준」에 부합하거나,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(별표)에 있는 「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」에 부합하여야 한다.

#### ■ 신청방법

보호자(부모 및 기타 보호자)는 읍·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함. 단, 장애아보육료 지원을 받기 원하는 비등록 장애아동인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(온라인신청 불가)



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 이용권) 신청(변경) 신청서,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 및 연장보육 필요 사유별 증빙자료,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·제공·이용 동의서



보육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되며,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매월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 하면 된다(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이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용도 국민행복카드로 함께 결제).

#### (2) 유아학비 지원

#### ■ 지원대상

연령	구분	지원범위
DF 2×5 HI	유아학비	국·공·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~5세 유아에게 소득수준에 상관 없이 전 계층 지원
만 3~5세	방과후 과정비	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 참여자(1일 기본 교육과정 포함 8시간(학부모 동의 시 7시간) 이상)에게 지원

<sup>※</sup>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의 경우 유아학비 지원 제외(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)

#### ■ 지원금액

(단위 : 원)

구분	ct st	지원액(월)		
	연령	국·공립유치원	사립유치원	
유아학비	만 5세			
	만 4세	60,000	240,000	
	만 3세			
방과후 과정비	만 3~5세	50,000	70,000	

- (신청) 보호자가 유아의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직접 신청도 가능(www.bokjiro.go.kr)
- (자격결정) 대상자의 출생 연월일 확인
- (지원) 지원대상가구는 지원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유치원에 납부
  - ※ 전자카드(아이행복카드)를 통한 대상자 인증 및 지원금액 확인·신청

#### (3)부모급여 지원

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,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급

■ **지원대상**: 0-1세 아동

■ **지원내용**: 0세 월 100만원, 1세 월 50만원

■ 지급방식: 가정양육 시 현금,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바우처로 지원.

※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

■ 신청 : 보호자가 영유아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를 방문하여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(www.bokjiro.go.kr또는 모바일앱 "복지로")

#### (4) 가정양육수당 지원

- **지원대상**: 어린이집·유치원·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교 취학전 24~86개월 미만 아동(0~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)
- ※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영유아의 경우 가정양육수당 지원 제외(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)

#### ■ 지원금액

- 양육수당: 24~85개월(월 100,000원)
- 농어촌 양육수당: 24~35개월(월 156,000원), 36~47개월(월 129,000원), 48~85개월(월 100,000원)
- 농어촌 양육수당: 12개월 미만(월 200,000원), 12~24개월 미만(월177,000원), 24~36개월 미만(월 156,000원), 36~48개월 미만(월129,000원), 48~86개월 미만(월 100,000원)

(단위:원)

연령	양육수당	연령	농어촌양육수당	연령	장애아동 양육수당
24~85개월		24~35개월	156,000	24~35개월	200,000
	100,000	36~47개월	129,000	36~85개월	100,000
		48~85개월	100,000	30-03711	

- 수당 지급일 : 매월 25일(토·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)
- 수당지급 방식
- 현금지급(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)
  - ※ 영유아보육사업의 가구원(보장단위)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
- 수당은 수급자 계좌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 후 입금 조치

#### ■ 거주지 변경 시의 수당지급

-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(15일까지): 신 거주지의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급
-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(16일부터): 구 거주지의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급
- 양육수당은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하되, 일할 계산하지 않고 해당 월 수당 전액을 지급한다.
- 지원기간 산출식: 대상아동의 출생년 + 7년의 2월까지 지원

#### ■ 선정기준

• 소득수준 무관하게 전(全)계층 지원. 단, 장애아동은 등록장애인일 경우,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 지원자격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 지원

연령	양육수당	농어촌양육수당	장애아동양육수당	
선정기준	부모 또는 아동 명의 통	농어업인가구의 자녀	장애인등록아동	
구비서류	장사본	(농업경영체증명서 등)	'장애인등록증'	

#### ■ 신청

• 보호자가 영유아의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를 방문하여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(www.bokjiro.go.kr 또는 모바일앱 '복지로')

#### (5) 아동수당

만 7세 미만 아동의 양육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증진을 돕는다.

■ **지원 대상**: 만 7세 미만 아동(0~83개월)에게 지급한다.

■ **지원 금액**: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

- 지자체장(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)
-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

#### ■ 지원 절차 및 방법

-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다.
-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신청(online.bokjiro.go.kr)을 한다.

-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,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하다.
- 신청 기간 :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.
  - ※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

#### (6) 아이돌봄지원사업

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사업이다.

#### ■ 사업대상

•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

#### ■ 수행기관

• 전국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228개소

#### ■ 주요내용

• 시간제·종합형 돌봄 서비스 : 3개월 이상~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, 보육시설 등·하원 및 준비물 보조,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, 놀이 활동,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

#### ※ 종합형 돌봄 서비스는 가사 포함

- 영아 종일제: 3개월 이상~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
-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서비스 : 3개월 이상~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전염성·유행성 질병으로 인해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병원 이동 동행 및 돌봄 서비스를 특별지원

#### ■ 서비스 신청방법·절차

서비스 이용 희망(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발급)



#### 정부지원 미대상자



#### 회원가입

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(idolbom.go.kr) 회원가입 후 정회원 승인요청



#### 정회원 승인(관할 서비스 제공기관)

#### 정부지원 대상자



#### 주민센터 방문

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 터를 방문하여 정부지원 신청 부모 모두 직장건강보험가입자이거나 한부모가 족 지원법에 의거해 등록된 직장건강보험가입 한부모일 경우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 홈 페이지에서 정부지원 신청 가능



#### 판정통지(우편 및 문자 전송)



#### 회원가입

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(idolbom.go.kr) 회원가입 후 정회원 승인요청

# 서비스 신청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날짜, 원하는 시간에 맞추 어 서비스 신청 ↓

#### 이용료 납부

국민행복카드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카드사로 납부

\*가상계좌 이용자는 이용 1일 전까지 본인부담 금을 신청자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선입금



#### 서비스 이용

※ 더 자세한 정보는 가까운 지역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확인하거나 아이돌봄지원사업(idolbom.go.kr)을 통하여 검색 가능하며, 다누리콜 센터 ☎1577-1366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.